

충청북도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소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양 권 석

충청북도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3월 6일 이필용의원 등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감사위원회의 도민감사관 위촉기능을 운영기능으로 변경하고 감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 수를 확대함.

한편 조례의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문장의 체계를 정비하여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조례제명 간결 : 충청북도 감사위원회 조례
- 나. 감사위원회 목적 및 기능변경
- 다. 감사위원회의 구성인원 확대
- 라. 위원회 위원 연임규정 변경
-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용어 및 체계 정비

4. 검토의견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충청북도에서 요구하는 감사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진 감사위원들의 많은 참여와 자문이 이루어 지도록 운영을 개선하고 불부합한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충청북도의 감사방향에 대하여 원활한 자문이 추진되도록 감사위원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을 강화하고, 감사위원을 각종 감사에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

과거 징벌위주에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분야별로 전문가의 자문을 활성화시키어 도민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며, 또한 불부합한 자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상에 이견이 없음.

붙임 : 충청북도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
례안.

질의자료

1. 개정안 제2조 6호에 각종감사에 참여와 협조를 한다면 개정하는데 자문위원도 앞으로 감사에 참여하는 것인지?
각종감사에 참여하는 도민감사관하고 역할구분은 무엇인지?